

의안 번호	1596	<b>【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</b>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12. 3.(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12. 3.(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12. 13.(금)

### 2. 제안이유

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이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문화원의 사업을 규정한 각호를 삭제하고 법 제8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으로 수정(안 제3조)
- 나. 띄어쓰기 수정(안 제5조, 제6조, 제7조)

### 4. 근거법규 :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8조

### 5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음.

## 근거법규

### □ 지방문화원진흥법

제8조(지방문화원의 사업)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문화의 계발·보존 및 활용
2. 지역문화(향토자료를 포함한다)의 발굴·수집·조사·연구 및 활용
3.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
4.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
5.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
6.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
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
8.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